

(주)HB저축은행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6년 08월 28일자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감독 규정』에 따라(주)HB저축은행은채무자의개인신용정보를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·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(주)HB저축은행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(주)HB저축은행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hbsb.c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

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양도예정채권 명세 (2026.07.31기준)

(단위 : 원)

대출과목	고객명	계좌번호	최초대출원금	대출원금잔액	이자	법적절차비용	장래이자 면제대상	소멸시효 완성여부
일반자금대출	김*태	01600134**74	22,500,000	18,807,412	666,011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김*수	01600033**45	30,000,000	26,481,556	4,877,890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이*정	01600119**76	18,500,000	4,625,015	352,490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이*숙	01600033**01	44,540,509	44,316,778	444,363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엄*연	01600121**61	35,761,341	35,087,124	2,952,996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김*훈	01600044**17	22,000,000	16,136,876	1,691,569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김*영	01600121**11	12,358,580	12,097,070	261,510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조*영	01600110**21	42,384,200	42,339,130	5,486,581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신*선	01600047**76	16,707,398	15,585,595	1,012,016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신*선	01600088**05	1,123,400	1,066,448	-	-	부	부

일반자금대출	신*선	01600088**14	306,502	284,352	5,952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정*경	01600026**54	305,233	298,016	27,475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정*경	01600026**63	1,231,129	1,201,133	113,175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김*혁	01600081**79	4,129,844	3,585,490	57,406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김*혁	01600081**88	307,548	264,884	8,120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김*혁	01600081**97	4,196,488	3,697,570	37,143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홍*희	01600037**54	5,000,000	648,600	46,536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홍*희	01600037**63	10,000,000	1,308,732	102,486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홍*희	01600037**72	18,000,000	17,753,930	1,787,379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홍*희	01600037**81	14,400,000	14,220,092	1,998,708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이*남	01600035**11	20,000,000	1,678,522	82,955	-	부	부
일반자금대출	이*남	01600035**29	31,800,000	27,068,810	2,975,887	-	부	부

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**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■ 채무조정 요청권

-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(☎1670-6789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〈참고 : 채무조정 절차〉

①요청	②심사 및 결과통지	③동의	④채무조정서 작성	⑤합의
(채무자)	(금융회사)	(채무자)	(금융회사)	(채무자)
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	▶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▶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▶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	▶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 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